



202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26. 1.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 4인가구 기준 6.51% 인상]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의료급여 (중위 40%)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주거급여 (중위 48%)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교육급여 (중위 50%)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 원/월)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5년	356,568	323,664	311,162	311,139
'26년	426,741	372,206	350,882	350,841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2026년 제도 개선사항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각 항목별 쪽 수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통합신청 유의사항 (11쪽)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생략〉 - 맞춤형 급여 중 생계·의료급여(생계 및 의료급여, 이하동일)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권자 서류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합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결정하여 지급 가능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생략〉 - 맞춤형 급여 중 의료급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권자 서류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합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결정하여 지급 가능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통합신청의 개념 재정립 필요
취약계층 (14쪽)	0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 수급권자는 취약계층*으로 생활이 곤란하나, 부양의무자가 〈생략〉 * 근로무능력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병·실직·이혼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미혼)한부모 등	0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 수급권자는 취약계층*으로 생활이 곤란하나, 부양의무자가 〈생략〉 * 노인, 장애인, 중증·희귀·만성질환자, (미혼)한부모 등	○ 지침 상 ‘취약계층’의 개념 통일 ※ 7, 14, 226쪽의 ‘취약계층’이 동일하도록 수정
처리기한 (25쪽)	0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0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지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맞도록 문구 수정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 ※ 이 경우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보장가구의 범위 (32쪽)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다음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가능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다음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가능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가구원인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한 경우 ④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로 부모와 동일 가구 보장이 불가한 경우	○ 현행 요건 중 악용 우려* 또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민원 소지가 많은 요건 정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주거·교육 급여는 폐지)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청년이 부모와 주거지 분리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수급자격 취득 가능 ** 중증장애인의 자립 여부, 가정폭력 등을 지자체에 따라 좁게 또는 넓게 해석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저소득층 청년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주거 분리 목적(탈시설, 자립) 삭제, *가족관계 해체 사유 인정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보장가구의 범위 (32쪽)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로 부모와 동일 가구 보장이 불가한 경우 판단 시 참고사항 ※ 보장기관은 아래 목록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노숙자쉼터, 청소년쉼터, 여성 긴급 보호시설, 청년 그룹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등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 청소년전화 1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긴급전화 1366,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관, 청년센터, 청년미래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등 상담기록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족관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진단받은 기록 등		30세 미만 미혼자녀 개별가구 인정 판단 시 참고사항 신설												
보장가구의 범위 (32쪽)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u>사람으로서</u>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u>사람이 그의</u>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생략>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u>사람(A)으로서</u>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u>사람(B)이 그(A)의</u>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현행과 같음>	○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수정												
가구 구성 예시 (34쪽)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생략> 예시 1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자녀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참조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 <현행과 같음> 예시 1 <table><tr><th>주소지 ㉑</th><th>주소지 ㉒</th></tr><tr><td>○ 부, 모</td><td>○ 대학생 형(21세), 학생(17세)</td></tr><tr><td colspan="2">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한 경우</td></tr><tr><td colspan="2">☞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의 주소지(㉑)에서 보장 신청함</td></tr><tr><td colspan="2">※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td></tr><tr><td colspan="2">☞ (주거) 대학생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참조</td></tr></table>	주소지 ㉑	주소지 ㉒	○ 부, 모	○ 대학생 형(21세), 학생(17세)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한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의 주소지(㉑)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참조		
주소지 ㉑	주소지 ㉒														
○ 부, 모	○ 대학생 형(21세), 학생(17세)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한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의 주소지(㉑)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참조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예시 2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아니나 <생략>	예시 2 <table><tr><th>주소지 ㉓</th><th>주소지 ㉔</th></tr><tr><td>○ 부, 모</td><td>○ 미혼누나(31세), 학생(17세)</td></tr></table>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의 주소지(㉓)에서 보장 신청함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보장가구에 포함	주소지 ㉓	주소지 ㉔	○ 부, 모	○ 미혼누나(31세), 학생(17세)	
	주소지 ㉓	주소지 ㉔					
	○ 부, 모	○ 미혼누나(31세), 학생(17세)					
	예시 3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생략>	예시 3 <table><tr><th>주소지 ㉓</th><th>주소지 ㉔</th></tr><tr><td>○ 부, 학생(17세)</td><td>○ 모(별거 중)</td></tr></table>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 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며, 부와 학생의 주소지(㉓)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주소지 ㉓	주소지 ㉔	○ 부, 학생(17세)	○ 모(별거 중)	
주소지 ㉓	주소지 ㉔						
○ 부, 학생(17세)	○ 모(별거 중)						
예시 4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 4 <table><tr><th>주소지 ㉓</th><th>주소지 ㉔</th></tr><tr><td>○ 부(이혼), 학생(17세)</td><td>○ 모(이혼)</td></tr></table>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한 2인이며, 부모의 주소지(㉓)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주소지 ㉓	주소지 ㉔	○ 부(이혼), 학생(17세)	○ 모(이혼)		
주소지 ㉓	주소지 ㉔						
○ 부(이혼), 학생(17세)	○ 모(이혼)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예시 5 <u>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u> - <u>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u> 예시 6 <u>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u> - <u>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u>	예시 5 <table><tr><th>주소지 ㉗</th><th>주소지 ㉘</th></tr><tr><td>○ 모(이혼)</td><td>○ (외)조모, 학생(17세) ※ 부는 행방불명, 모의 생활비 지원 없음</td></tr></table>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㉗)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 6 <table><tr><th>주소지 ㉗</th><th>주소지 ㉘</th><th>주소지 ㉙</th></tr><tr><td>○ 부(이혼)</td><td>○ 모(이혼)</td><td>○ (외)조모, 학생(15세) ※ 부에게 생활비 지원받음</td></tr></table> 학생(15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와 자녀 2인이며, 부의 주소지(㉗)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에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므로,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가구를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주소지 ㉗	주소지 ㉘	○ 모(이혼)	○ (외)조모, 학생(17세) ※ 부는 행방불명, 모의 생활비 지원 없음	주소지 ㉗	주소지 ㉘	주소지 ㉙	○ 부(이혼)	○ 모(이혼)	○ (외)조모, 학생(15세) ※ 부에게 생활비 지원받음	
주소지 ㉗	주소지 ㉘												
○ 모(이혼)	○ (외)조모, 학생(17세) ※ 부는 행방불명, 모의 생활비 지원 없음												
주소지 ㉗	주소지 ㉘	주소지 ㉙											
○ 부(이혼)	○ 모(이혼)	○ (외)조모, 학생(15세) ※ 부에게 생활비 지원받음											
별도가구 보장 (41쪽)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의료급여의 경우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u>부양의무자 기준 초과</u>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생략〉 (1) 〈생략〉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가구 전체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준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나머지 가구원을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현행 기준으로는 (손)자녀(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조)부모가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부모도 별도가구로 보장 가능하도록 개선
별도가구 보장 (42쪽)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❶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❶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생계급여)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4) 취지에 맞춰 중증장애인을 의료급여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에 생계 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하도록 완화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table><tr><th>1인가구</th><th>2인가구</th></tr><tr><td>3,348,818원</td><td>5,505,721원</td></tr></table> - 개별 보장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1)~(나), (7)~(가)·(다),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적용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table><tr><th>대도시</th><th>중소도시</th><th>농어촌</th></tr><tr><td>3.5억원</td><td>2.5억원</td><td>2.2억원</td></tr></table>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1인가구	2인가구	3,348,818원	5,505,721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반영 *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table><tr><th>1인가구</th><th>2인가구</th></tr><tr><td>3,589,933원</td><td>5,879,009원</td></tr></table>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table><tr><th>대도시</th><th>중소도시</th><th>농어촌</th></tr><tr><td>3.5억원</td><td>2.5억원</td><td>2.2억원</td></tr></table>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로 반영(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①-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1)~(나), (7)~(가)·(다), (8)에 해당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는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반영하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70% 이하 적용(재산기준은 위와 동일)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table><tr><th>1인가구</th><th>2인가구</th></tr><tr><td>4,359,205원</td><td>7,138,797원</td></tr></table>	1인가구	2인가구	3,589,933원	5,879,009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1인가구	2인가구	4,359,205원	7,138,797원	
1인가구	2인가구																										
3,348,818원	5,505,721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1인가구	2인가구																										
3,589,933원	5,879,009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1인가구	2인가구																										
4,359,205원	7,138,797원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3쪽)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수급(권)자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1세 유자격자 : '45.8.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생략> (1)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2)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3)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4) 1세 유자격자가 포함된 가구 - <생략> (5) 2세(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1세 유자격자는 가구원에 미 포함) * 2세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외 동포청에 영주귀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 - 국적 취득 시 1세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귀화)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를 유예	가. 영주귀국사할린동포의 수급(권)자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동포 : 1세 유자격자 : '45.8.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현행과 같음> 1) 특례대상 가) 1세 유자격자 : 영주귀국사할린동포 본인 나) 2세 : 「사할린동포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영주귀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동반가족* * 1세 유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사망 등으로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가구원에 1세 유자격자, 2세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보장가구 구성 2) 특례내용 가) 1세 유자격자가 포함된 가구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나) 2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영주귀국을 위해 입국 후 급여 신규 신청 시 1세 유자격자가 포함된 가구와 동일 특례 적용하여 급여 결정 ※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관리	○ 특례대상을 「사할린동포법」에서 정하는 동반가족의 범위로 확대 (재외동포청 요청 수용) - 동반가족의 경우 입국 당시에는 재산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득평가액만으로 보장 결정하되, 수급자 선정 후에는 재산 취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 정비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6) 가구원에 1세 유자격자, 2세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보장가구 구성 1세 무자격자 <내용 생략>	-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를 유예하고,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현행과 같음>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5쪽)	<신설>	타.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 1) 특례대상 ○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가구 2) 특례내용 ○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일시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 3) 특례 적용기간 ○ 배상금 등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3년 - 수령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용기간 종료일로 함 ※ 예시 일시금 수령일이 '26.1.20.인 경우 특례 적용기간 : '26.1.20. ~ '29.1.31. ('29.1.19. 이 종료일이 아님에 유의)	○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일시적 지원금으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를 위해 특례 신설 - 일시금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일시금 만으로는 수급자의 생계 유지가 지속 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6쪽)	〈신설〉	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관련 주거급여 특례 1) 운영 기본원칙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자격 유지 ※ 단, 주거급여 특례적용 후 지급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이 특례적용 전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사전동의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2) ~ (6) 〈상세내용 생략〉	○ 주거급여 개선사항 반영 (국토교통부 요청 수용)
실제소득 (100쪽)	나. 실제소득[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3) 〈생략〉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나. 실제소득[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3) 〈현행과 같음〉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100~101쪽)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4) 〈생략〉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4) 〈현행과 같음〉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교육 부대비용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초과액 전액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따라야 함을 명시 - 또한, 부양의무자의 학비 지원은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 삭제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원 또는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생략〉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 (6)~(9) 〈생략〉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11)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 보육·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통상적인 국·공립기관을 의미하며, 사립초등학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예시 1인가구 수급(권)자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매월 교육 부대비용 7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30만원은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40만원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한 금액을 반영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현행과 같음〉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현행과 같음〉 (6)~(9) 〈현행과 같음〉 (10) 〈삭제→‘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이동〉 (11) 〈삭제→‘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이동〉	- 아울러,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육 부대비용’ 간 소득 산정 제외 금액의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육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명시 ○ 시행령 규정 및 체계에 맞도록 수정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101쪽)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1) 다음의 2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삭제〉	○ 조례에 따른 지자체 지원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경향 반영 - 특히, 저소득층 지원으로 시작해서 일반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사례 증가에 따라, 동일 지원금을 저소득층 지원 시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주민 지원 시에는 소득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불합리점 개선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재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 서비스에 해당할 것 - <생략>	(가)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재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 서비스에 해당할 것 - <현행과 같음> (2) 이·통장기본수당은 월 40만원 범위 내에서 제외	- 이에 조례에 따른 지자체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요건 중 지원 대상 요건 삭제 ○ 이·통장기본수당의 소득 산정 제외 근거 마련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103쪽)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6) <생략> <신설>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2)~(3) <생략> <신설>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6) <생략>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의 월평균 금액 (2)~(3) <현행과 같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 국가 수호에 따른 신체적 희생을 감안하여 장애요인으로 인정 (국가보훈부 요청 수용) ○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의료비 금액이 조사일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월평균 금액임을 명시 ○ 타 법 규정 반영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근로·사업소득 공제 (104~106쪽)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table><thead><tr><th>공제 대상 수급(권)자</th><th>공제대상 소득</th><th>공제율</th></tr></thead><tbody><tr><td>• 등록장애인</td><td>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td><td>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td></tr><tr><td>•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td><td>근로·사업소득</td><td>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td></tr><tr><td>•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td><td>근로·사업소득</td><td>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td></tr><tr><td>•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td><td>근로·사업소득</td><td>30%</td></tr><tr><td>•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td><td>행정인턴 참여소득</td><td>30%</td></tr></tbody></table>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근로 유인 강화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청년 추가공제 대상의 연령 및 공제수준 확대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통일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수준으로 통일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1) <생략> (2) 30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생략> (3) 29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4) 아동시설폐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청년 <생략>	(1) <현행과 같음> (2) 35세 이상(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생략> (3)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삭제>	○ 청년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연령과 공제금액이 중복되는 대상자 삭제하고, 청년 추가공제 연령을 초과하는 학생의 연령을 상향 - 아울러, 연령 계산이 어려운 현행 기준을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5)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6), (7), (8) <생략>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4)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5), (6), (7) <현행과 같음> (9) <삭제>	
추가적인 지출요인 (106~ 107쪽)	5)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법 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5조의2] (1)~(4) <생략> <101쪽에서 이동 및 수정>	5)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법 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5조의2] (1)~(4) <현행과 같음> (5)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6)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 시행령 규정 및 체계에 맞도록 수정 - 아울러,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추가(여성가족부 의견 반영)
근로소득 정의 (107쪽)	가. 근로소득 1)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경우 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체계 및 문구 수정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단,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으로 국한(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소득세법 참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u>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은 제외)</u> ※ 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소득세법」 참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	
기타 사업소득 (113쪽)	○ <u>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판매 등, 업종코드 : 94****)</u> - <u>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적용</u>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 참조) 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생략> ※ 업종별 단순경비율 : <생략>	○ <u>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 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u> - <u>월급명세서 등으로 실제소득 반영 시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참고)</u>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해야 하는 경우 명시
공적이전 소득 (126~ 127쪽)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1)~(6) <생략>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u>생계지원금 중 월 10만원 이내</u>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1)~(6) <생략>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u>생계지원금</u>	○ 생계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액 삭제 (국가보훈부 요청 수용)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 (나) (지자체 지원) 이·통장 기본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외 기타 지원 ※ 이·통장 기본수당은 20만원 범위 내 공제 적용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 (나) (지자체 지원) 이·통장 기본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금품) 외 기타 지원 ※ 이·통장 기본수당은 40만원 범위 내 공제 적용	○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반영
토지가격 적용률 (142~144쪽)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2) 토지, 건축물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나) 조사방법 (1) 토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생략>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2) 건축물(건물, 시설물) : <생략> (3) 주택 : <생략>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144쪽)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2) 토지, 건축물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나) 조사방법 (1) 토지 : <좌동>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생략> <삭제> (2) 건축물(건물, 시설물) : <현행과 같음> (3) 주택 : <생략> <삭제> <삭제> <삭제>	○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토지가격적용률 폐지 *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일반재산 환산 자동차 (157쪽)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생략>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2) 생업용자동차로서 <이하 생략> <위치 이동>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자동차와 하단 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나)’와 ‘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 ‘나)’와 ‘다)’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자동차도 월 100% 적용 ▶ 가구 특성별 나)와 다)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심의 필요없음) • 장애인가구 : 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나)-(1) 또는 다)-(1)에서 1대와 나)-(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 일반가구 : 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나)-(2)에서 1대와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현행과 같음> 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현행과 같음> * 소형 기준(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에 해당(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에 해당) (2) 생업용자동차로서 <현행과 같음>	○ 자동차의 소득환산율(100%-제외-일반재산 소득환산율) 구분 순서로 지침 정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소형·중형·대형 자동차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을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1) 또는 다-(1)에서 1대와 가)-(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생략〉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이하 생략〉 (2) 승용자동차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생략〉 (3) 승합·화물자동차 생계·의료 (가)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전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나) 〈생략〉 주거·교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생략〉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위치 이동〉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현행과 같음〉 (2) 승용자동차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현행과 같음〉 (3) 승합·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및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기타 산정되는 재산 (164쪽)	3) 조사방법 라)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생략>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3) 조사방법 라)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식대 등)	○ 장례비 및 혼례비 사용액은 장소사용 비용뿐 아니라 식비 등 부수적인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침에 명시된 장소사용 비용만 차감하는 사례 등 업무처리 시 혼란 방지를 위해 수정
부채 (166쪽)	05. 부채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05. 부채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수급(권)자가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단, 2025.12.31. 기준 여러 채의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7.1.1.부터 적용	○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 보증금의 부채 차감으로 인해 실제 빈곤하지 않음에도 수급 가능한 불합리점 개선 ※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조사 시에는 미적용 - 다만, 기존 수급자의 경우 불이익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 1년 적용
임대 보증금 처리방법 예시 (168쪽)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u>대도시</u>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생략> • <u>중소도시</u>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 <생략> • <신설>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u>서울</u>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현행과 같음> • <u>세종시</u>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 <현행과 같음> • <u>경기도 과천시</u>에 전세(3천만원) 거주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재산가액 7천만원,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구입한 것을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3천만원)은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	○ 현행 재산기준의 지역 구분에 맞도록 지역명을 수정하고, -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급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예시를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구입한 주택(7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구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기타 산정재산으로 산정하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타 재산 증가분으로 차감 - 구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재산범위 특례 (175쪽)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1)~(2) <생략> (3) 상기 수급(권)자의 <u>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u> 기본조건과 추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1)~(2) <현행과 같음> (3) 상기 수급(권)자의 <u>순재산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환산이 어려운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며</u>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모든 재산이 특례기준에 적합해야 그 중 처분이 곤란한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현행 문구는 처분이 곤란한 재산만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구 수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195쪽)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개념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산정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으로 <u>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판정기준</u>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개념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산정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으로 <u>부양능력 없음, 있음의 판정기준</u>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급여의 결정 (240쪽)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시·군·구 <생략> ※ 고용임금확인서, <생략> - 보장결정은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 <신설>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시·군·구 <생략> ※ 고용임금확인서, <생략> - 보장결정은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 ※ <u>생계의료급여 결정 시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도</u> <u>동시 책정 필요</u>	○ 신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책정 누락 방지 (장애인자립기반과 의견 반영)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급여계좌 예외 (238~ 239쪽)	0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 〈생략〉 나. 급여계좌 예외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u>개설</u>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1)~(4) 〈생략〉 (5) <u>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u>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이하 생략〉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생략〉 ○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 <u>계좌 개설</u>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	0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 〈생략〉 나. 급여계좌 예외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u>개설 또는 사용</u>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1)~(4) 〈현행과 같음〉 (5) <u>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의 개설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현행과 같음〉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현행과 같음〉 ○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 <u>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 또는 사용</u>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 미성년 단독가구 등의 경우 급여의 대리수령 사유와 해당사유의 확인방법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 통장 개설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계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급여 중지자 관리 (279쪽)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u>신설</u>〉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 <u>확인조사 등으로 중지 급여의 재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신청 안내</u> ※ 통합신청을 한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보장결정하여 급여 지급 가능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 중지자 관리 방안 정비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288쪽)	가.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 1) 반기별 점검 〈생략〉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로서, 보호 중인 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2) 연 1회 점검 〈신설〉	가.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 1) 반기별 점검 〈생략〉 〈삭제〉 2) 연 1회 점검 3) 필요 시 점검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로서 보호 중인 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상황점검(분기별 1회)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연 4회 이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급여관리 점검 의뢰가 있는 경우에 급여관리 점검 실시 * 이상징후 예시 : 영양·위생상태, 발달부진, 차림새 등	○ 가정위탁제도의 성격,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관리 점검에 있어 일반 급여관리자와 위탁부모를 다르게 볼 필요 - 민원 해소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부모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방식 변경
보장비용 징수 소멸시효 (309쪽)	04. 소멸시효 ○ 보장비용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 「국가재정법」 제96조 -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신설〉	04. 소멸시효 ○ 〈좌동〉 -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설명 추가 ※ 타 사업(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참고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부정수급자 고발 (309쪽)	05. 고발조치 ○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칙규정 또는 개별법 별칙규정 -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u>고발조치</u> 〈신설〉	05. 고발조치 ○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칙규정 또는 개별법 별칙규정 -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 및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53조에 따라 반드시 <u>고발조치</u>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수사의뢰 및 고발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제출기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을 고려하여 고발 대상 부정수급 금액 상향 - 아울러, 고발이 강행규정임을 명시하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																
보장시설의 범위 (321쪽)	02.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의 범위 <table><tr><th>구분</th><th>시설종류</th></tr><tr><td rowspan="5">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제외</td><td>• 아동양육시설</td></tr><tr><td>• 아동일시보호시설</td></tr><tr><td>• 아동보호치료시설</td></tr><tr><td>• 자립지원시설</td></tr><tr><td>• 종합시설</td></tr></table>	구분	시설종류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제외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종합시설	02.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의 범위 <table><tr><th>구분</th><th>시설종류</th></tr><tr><td rowspan="5">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 쉼터 포함)은 제외</td><td>• 아동양육시설</td></tr><tr><td>• 아동일시보호시설</td></tr><tr><td>• 아동보호치료시설</td></tr><tr><td>• 자립지원시설</td></tr><tr><td>• 종합시설</td></tr></table>	구분	시설종류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 쉼터 포함)은 제외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종합시설	○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장시설에서 제외됨을 명시
구분	시설종류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제외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종합시설																		
구분	시설종류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 쉼터 포함)은 제외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종합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324쪽)	보장시설 수급자의 가구원 조사 시 유의사항 • 배우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 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배우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시설에 입소한 수급권자와 함께 조사해야 할 대상으로, - 시설에 입소한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가구 전체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업무처리 이해도 제고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 이 때 시설 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하나의 보장가구를 구성하였어도 개별적으로 부양의무를 판정함 -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의 장남, 차남이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각각 1인으로 부양능력을 판정 • 운영예시 : 4인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급여실시 여부 결정 -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일부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장시설 수급자격은 유지 ※ 다만,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가구원 조사 시 보장시설 수급권자는 배우자와 동일 보장가구이기에 가구단위로 함께 조사하여 일반 수급자로 보장결정하고, 위 절차에 따라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함	- <u>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일반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하여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최종 판단하며, 보장시설 입소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u> - <u>의료급여의 경우, 시설 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u> •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하나의 보장가구를 구성하였어도 개별적으로 부양의무를 판정함 -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의 장남, 차남이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각각 1인으로 부양능력을 판정 • 운영예시 : 4인가구 수급권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4인가구로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후 적합하면 3인(일반)/1인(시설)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최종 판단 - <u>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3인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u> - <u>시설 입소자에게 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수급자로 보장결정 불가하며, 이 때 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4인가구로 다시 판단하지 않음</u>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357쪽)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으로 (손)자녀(가구)를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로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사실상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사항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으로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구)를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로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사항 - 사실상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특정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사항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참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감면제도 (482쪽)	<table><tr><th>지원내용</th><th>비 고</th></tr><tr><td>〈신설〉</td><td></td></tr></table>		지원내용	비 고	〈신설〉		<table><tr><th>지원내용</th><th>비 고</th></tr><tr><td>■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율)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 수급자 87%~, 〈생략〉</td><td>시·군·구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tr></table>		지원내용	비 고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율)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 수급자 87%~, 〈생략〉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설 제도 안내(행안부 의견 반영)
	지원내용	비 고											
〈신설〉													
지원내용	비 고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율)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 수급자 87%~, 〈생략〉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항] 질의응답

▣ 2026년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관련

1.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 관련

1)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집단시설 불법수용 사건 등

2) 피해자 본인 사망 후 배상 등이 확정되어 유족인 수급자가 배상금을 승계 또는 상속한 경우 특례 대상인지?

- 특례 대상에 해당됨

3) 배상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도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지?

- 배상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만큼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

(예시 : 배상금 1억원을 포함하여 공시지가 2억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억원만 재산 산정)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는 금품은?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도 부가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품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난방비, 교통비, 명절위문금 등)
- 청년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장수수당, 손자녀양육수당 등은 생활비 항목과 관계없는 금품이므로,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음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3. 수급(권)자가 주택 2채에 대해 각각 임대를 준 경우 재산 산정 방법은?

예시) A주택(재산가액 1억)을 7천만원에 임대를 주고, B주택(재산가액 7천만원)을 5천만원에 임대를 준 경우

- 주택이나 점포의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로 반영
-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한 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므로, 예시에서 2채의 주택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A주택의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부채로 반영
-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미반영하되, 동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으로 반영

사례 1.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재산, 부채 모두 미반영

사례 2.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재산으로 5천만원, 부채 미반영

사례 3.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으로 본인 거주 전세를 얻은 경우 : 주거용재산으로 5천만원, 부채 미반영

▣ 기타

1. 장애요인으로 인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25년 기준, 342,510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25년 기준, 생계·의료 90,000원, 주거·교육 80,000원) 관련하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지급되어,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감소(432,510원→80,000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 그러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제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해당 금액만큼 부가급여가 증가(90,000원→432,510원)하여, 기초연금 전환으로 인한 장애인연금 수급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지 않음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2. 9월까지 공적이전소득(예 : 실업급여)을 받은 사람이 10월에 급여신청을 한 경우, 공적자료로
통보된 실업급여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삭제. 즉, 신규 수급권자에 한하여
급여를 신청한 달의 전월에 지급 종료된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명을 통해 소득에 미반영

3.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점검 주기가 변경된 경우 처리 방법

- 반기별 점검 대상 급여관리자에 대해 상반기 급여관리 점검 실시 후 하반기에 연 1회
점검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상반기에 점검 완료했으므로 하반기 점검 불필요
- 연 1회 점검 대상 급여관리자에 대해 상반기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후 하반기에 반기별
점검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당해 하반기에 1회 점검 후 익년부터 반기별 점검 실시

[참고사항] 업무 참고자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 관련 유의사항

- (확인기준) 조사시점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자료 조취로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과 일반재산

* 부양의무자 등이 조사시점의 월 소득이 연간 월 평균소득과 차이가 나는 과다(또는 과소) 산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양의무자 본인으로부터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받아 사실 여부 확인

- (연 소득 관련 적합여부 판단기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월 소득 × 12개월)하여, 연 소득 1.3억원 초과(월 1,084만원) 여부로 수급(권)자 적합여부 확인

✓ 조사시점에서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직전 1년간 누적 소득액의 1.3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산정 관련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적용 대상	적용 방법
수급(권)자의 보장가구원에 <u>18세 미만의 (손)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u>	○ 최초 적용 시 - 2명 이상의 (손)자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함 ※ (손)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 가능 ○ 적용기한 - 2명 이상의 (손)자녀 중 최소연령 (손)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